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2. 21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0. 12. 22

다. 상 정 일 자 : 제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12. 2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여철 세무과장)

가. 제안이유

- 현행 시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감면제도를 2000.12.31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구세감면 조례의 불필요한 감면대상을 폐지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벤처기업육성 촉진을 위한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등 현행 구세감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하여 면제하여 주던 면허세 감면 규정을 삭제 (안 제2조)
- 지방세법개정안 제270조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단체 소유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삭제(제3조)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과세 규정을 우리 구와 관련이 없어 삭제 (제26조)
-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감면조항 신설(안 제11조)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육성촉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 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신설(안 제22조)
-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맞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등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 개선함(안 제10조)

3.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및 제79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 및 제115조
-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제3조 및 제4조, 제5조
-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및 4,5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 임대주택법 제2조 및 제12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8조의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 부산교통공단법 제7조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8조
- 선물거래법 제3조 및 제37조, 제38조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과 오는 2001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폐지에 따른 구세감면 조례 중 우리 구와 관련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의 통합으로 생긴 농업기반 공사와 벤처기업육성 촉진을 위한 감면규정을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감면기간은 2000.12.31자로 종료됨에 따른 적용

시한을 오는 2003. 12. 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과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 면제, 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제정)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몇 년간을 감면 기간으로 정해야 하는지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시행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5. 결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